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. 3. 11 선고 2019가단443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3. 11.

주 문

1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994. 4. 19. 접수 제8827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, 257조 1항)

판사유재현

별지